

[별표 4] <개정 2015.7.13.>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

(제43조제2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1]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 단서를 적용한다.

[주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부기관의 구매분으로 한정하며,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가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기관의 구매분에 대해서는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

[주3]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의 경우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제23조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달은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